

## 데이터 개인정보와 보안을 위한 학부모 권리 장전

몇 가지 법률 및 규정이 자녀를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합니다. "개인 식별가능 정보" 또는 "PII"로 알려진 학생- 특정 데이터가 이런 정보에 포함됩니다.

자녀의 PII를 보호하는 연방법에는 [가정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\(FERPA\)](#), [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\(COPPA\)](#), [학생 인권 보호 조항\(PPRA\)](#) 및 [장애인 교육법\(IDEA\)](#)이 포함됩니다. [뉴욕 교육법 2-d](#) 및 뉴욕주 교육 커미셔너의 관련 규정들, 그리고 교육청 [교육감 규정 A-820](#) 또한 자녀의 개인 식별가능 정보(PII)의 비밀을 보호합니다.

뉴욕주 법에 따라, 귀하가 뉴욕시 공립학교 학군(교육청)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라면, 귀하는 자녀분의 개인 식별 가능 정보(PII)의 비밀 보장 및 보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:

- 자녀의 개인 식별가능 정보(PII)는 마케팅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공개될 수 없습니다.
- 귀하의 자녀가 18세 이하라면:
  - 귀하는 교육청이 귀하의 요청을 받고 귀하의 신원을 확인한 후 45일 이내에 자녀의 교육 기록의 내용 전부를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.
  - 귀하는 또한 자녀의 교육 기록이 부정확하거나,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, 또는 자녀의 개인 정보를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기록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  - 귀하의 권리는 교육청 계약자 또는 교육청을 대신한 외부 기관에 저장되어 있는 교육 기록에까지 확대됩니다.
- 귀하는 자녀의 개인 식별가능 정보(PII)가 침해 또는 무단 공개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귀하는 자녀의 개인 식별가능 정보(PII)의 침해 및 무단 공개의 가능성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고 이러한 불만 사항을 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. 교육청은 귀하의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역일 기준 60일 이내에 반드시 귀하에게 답변을 주어야 합니다.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, 교육청은 귀하에게 대략적인 응답 날짜와 함께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.

뉴욕주 교육부(NYED)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방법:

*온라인:* <http://www.nysed.gov/data-privacysecurity/report-improper-disclosure>

*이메일:* [CPO@mail.nysed.gov](mailto:CPO@mail.nysed.gov)

*우편:*

Chief Privacy Officer



**Department of  
Education**

Chancellor David C. Banks

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 
89 Washington Avenue, Albany NY 12234

전화: 518-474- 0937

교육청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방법:

이메일: [studentprivacy@schools.nyc.gov](mailto:studentprivacy@schools.nyc.gov)

우편:

Chief Privacy Officer,  
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Room 308  
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  
52 Chambers St, New York, NY 10007

이러한 연방법과 뉴욕주 법 및 규정은 교육청과 특정 외부 기관들이 자녀의 개인 식별가능 정보(PII)를 비밀로 안전하게 유지할 요건을 강제합니다. 예를 들어, 교육청과 특정 외부 기관들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:

- 자녀의 개인 식별가능 정보(PII)는 뉴욕주 법 및 연방법에 따라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 및 공개됩니다.
- 자녀의 개인 식별가능 정보(PII)를 보관 또는 전달할 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. 이런 안전 장치들은 반드시 업계 표준 및 모범 사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이런 안전 장치들의 예로는 암호화, 파이어 월 및 비밀번호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.
- 개인 식별가능 정보(PII)의 수집, 처리 및 전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- 교육청 직원 및 자녀의 개인 식별가능 정보(PII)를 다루는 외부 기관 담당자들은 해당 법률, 정책, 그리고 업계 표준 및 모범 사례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 장치에 대해 교육받아야 합니다.
- 자녀의 개인 식별가능 정보(PII)를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외부 기관과의 서면 동의서에는 개인 정보 보호 준수 및 자녀의 개인 식별가능 정보(PII) 보안 유지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- 외부 기관은 교육청이 외부 기관에게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한 자녀의 개인 식별가능 정보(PII)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본을 보관해서는 안됩니다.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개인 식별가능 정보(PII)는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삭제되어야 합니다.

뉴욕주 교육부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[학생 관련 데이터 전체 목록](#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목록의 사본을 원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: Office of Information & Reporting Services,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, Room 863 EBA, 89 Washington Avenue, Albany, NY 12234.